「'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」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공단 검토 기준 안내

□ 목 적

○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사업장의 **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사유별 검토**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 신청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

□ 변경 검토 기준 안내

○ 설비 종류 변경이나 제외는 사업계획서·현장평가 내용과 상이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의 유해·위험요인 미개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 승인 불가하며, 예비선정 시 가점이 하락하는 경우도 승인 불가

< 예시 참조 >												
	변경 :	승인	불승인	사 유								
구 분	설비 종류 변경이 없는 경우	▶설비대수 변경	0									
		▶설비금액 변경	0		-							
		▶설비모델 변경	0									
	설비 종류 변		0	사업계획, 현장평가 내용과 상이하고 제출했던 유해-위험요인이 미개선 되 므로 승인 불가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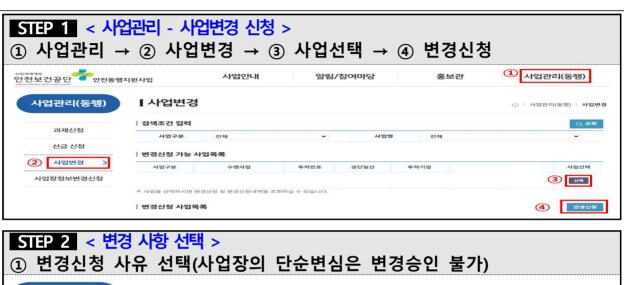
< 사업계획 변경 승인 예시 >									
보조결정			예시1	설비	대수	승인 사유			
설비	대수		변경 승인	프레스	1대	· 설비 종류에 변경이 없고,			
프레스	2대			전단기	1대				
				절곡기	1대	· 신청 대수만 변경			
전단기				컨베이어	2대	→ 변경신청 슝인			
(노후 위험기계)	2대		예시2	설비	대수	불승인 사유			
(=1 112 11)	2대		변경불승인	프레스	1대	· 설비 종류(기타 포함) 변경			
절곡기				산업용로봇	2대	· 노후 위험기계 제외로 예비선정			
	1대			원료공급기	2대	점수 하락			
컨베이어				컨베이어	제외	· 기제출한 유해·위험요인 미개선 → 변경신청 불승인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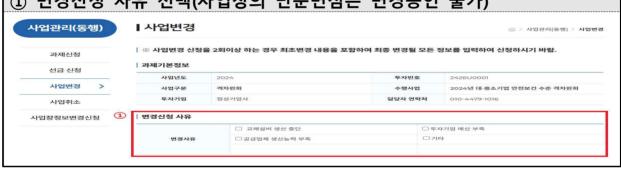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동 시 (재)신청한 <u>보조결정금액은</u> 상승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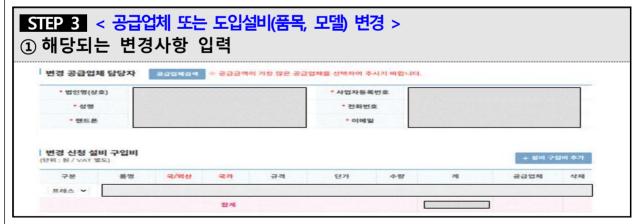
< 지원금액 변경 예시 >

구분	최초 신청시	1차 사업변경	2차 사업변경						
소요금액	2억원	1억 6천만원	2억원						
보조결정금액	1억원	8천만원 + 30만원* * 원가검토금액 보전	8천만 원 + 30만원						
※ 사업변경으로 인해 보조결정금액이 하향된 경우 다시 변경하여도 <u>상승</u> 불가									

< 사업변경 신청 방법 >







* 도입설비(품목, 모델명) 변경 시 견적서, 세부산출내역서, 사업계획서 및 카탈로그(도면) 등 파일을 첨부